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박양현 사회·도시위원장의 12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4. 22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손영일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8조(회의)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법정 입안 심사기준(법제처) 지침에 의거 개정

나. 주요골자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8조 제3항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대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 변두리지역의 기존 공동정호(우물)나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조례 제8조3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문제에 있어 의결의 찬반이 가부동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조항은 법안심사 기준의 통설에 의하면 부결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 통설이므로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없음.

5. 수정안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는 <u>결정권을 가진다.</u>	제8조(회의) ③ <u>부결된 것으로 본다.</u>